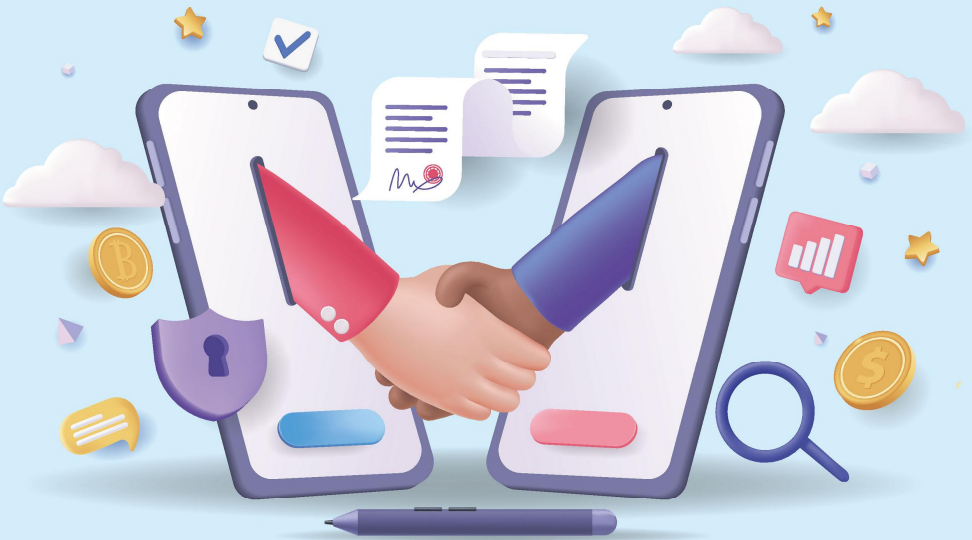


「 안전한 개인 간 전자거래를 위한 가이드북 」



PART 1 개요 _ 1

PART 2 유형별 분쟁사례 _ 4

1. 계약의 성립	4
2-1. 매매 목적물 하자	9
2-2. 매매 목적물 하자	12
2-3. 매매 목적물 하자	15
2-4. 매매 목적물 하자	16
2-5. 매매 목적물 하자	20
3-1. 계약취소 및 반품	24
3-2. 착오로 인한 계약취소	26
4-1. 계약해제	29
4-2. 계약해제	33
5. 위험부담	36
6-1. 미성년자의 법률행위	39
6-2. 미성년자의 법률행위	42
7. 주물과 종물	44

1. 개인 간 전자거래 분쟁예방 방법 46
2. 팔기 전에 알아두자! 중고거래 금지 품목 47
3. 인터넷쇼핑몰을 통한 판매금지 또는 판매제한 물품 52
4. 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59



PART 1 개요



국내 중고거래 시장 규모는 2008년 약 4조원에서 2020년 약 20조원으로 5배 이상 성장하였고, 2021년의 경우도 그 규모는 잠정적이거나 약 24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일반 이용자가 많이 사용하는 당근마켓, 번개장터, 중고나라 등 주요 플랫폼 3개 사의 거래규모도 합계 약 7조원에 이르는 등, 중고거래 시장은 오프라인 보다는 온라인을 통한 비대면 거래가 주요 흐름으로 굳혀가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이와 함께 불청객도 반드시 따라오기 마련이다. 거래에 따른 분쟁 역시 급증 하는 것이다. 물건을 실제로 보지도 않고 거래하는 비대면 거래의 특성상 대면거래에서 일어나는 분쟁에서 예상하기 어려운 다양한 분쟁이 발생하고 있음이 현실이다. 온라인상 거래에 있어 물품에 대한 정보는 온라인상 화면으로만 파악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화면에 게시된 물품과 실물의 차이부터 시작해서 품질, 성능, 색상, 디자인 등 다양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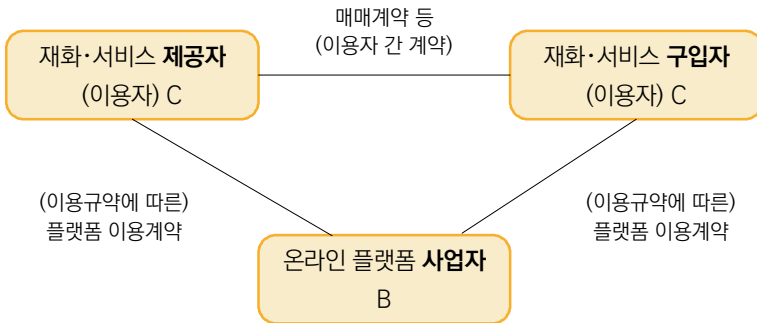
그런데 개인 간 거래의 경우, 상인의 상행위와는 달리, 지속적인 거래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물품이나 서비스에 한정된 일시적인 거래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거래 당사자 간의 신뢰를 판단하는데 상당히 어려운 문제점이 있다.

개인 간 전자거래는 민법이 상정하는 전형계약과 마찬가지로 개인 간 계약이 체결되는 것이나 그것을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거래한다는 점에서 특징이 있다.

보통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거래에 대하여 종래에는 사업자와 소비자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거래임을 전제로 다루어 왔으나, 개인 간 전자거래는 사업자가 아닌 개인 이용자 간 거래라는 점에서 B2C 거래와 차이가 있다.

이것을 종합하면 C(제공자)와 C(구매자) 사이에 계약(매매 계약, 서비스 제공 계약 등)이 존재하고, 플랫폼 사업자와 C(제공자), 플랫폼 사업자와 다른 C(구매자) 사이에는 플랫폼 이용 계약이 존재하고 있으므로, 3개의 계약이 존재하게 된다.

개별 당사자 간에 이루어지는 계약은 매매계약이 주류를 이루지만 서비스계약 등 다양한 계약도 있을 수 있다. 한편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와 이용자 사이에는 서비스 이용계약이 존재하는데, 법적으로 본다면 각 계약은 서로 별개이다. 하지만, 온라인 플랫폼 상에서 체결되는 이러한 이용자 간 계약은 플랫폼 사업자가 개입함으로써 성립이 가능해지는 것으로, 3개의 계약이 서로 관련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온라인 플랫폼 상에서 판매자 A와 구매자 B가 물품을 매매하는 취지의 합의를 하여 A와 B간에 매매 계약이 성립 되었을 경우, 판매자 A는 물품의 인도 의무를 지고, 구매자 B는 대금 지급 의무를 진다(민법 제563조). 만약

보내 온 물건에 하자가 있다면 매수인은 매도인을 상대로 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다(민법 제580조).

또한 A가 상품을 인도했음에도 불구하고, B가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채무불이행(이행 지체)이 되어, B는 최고를 한 후에 매매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민법 제544조). 이러한 관계는 플랫폼 거래를 통해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당사자 간의 매매계약이라는 법적 관계에 기초한 것이다.

개인 간 거래를 매개하는 온라인 플랫폼에 있어, 재화·서비스 제공자(이용자) 간에 생긴 손해 등 소비자 분쟁에 대해서는 플랫폼 사업자가 실제 거래 행위의 당사자가 되는 것은 아니고, 단순히 거래의 장이나 시스템을 제공하는 것에 불과하다.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경우 이용자에 대해 결함이 없는 시스템을 구축해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를 지는 것은 플랫폼 이용계약 또는 신의칙상 인정되는 의무라고 볼 수 있지만, 개별 거래의 성립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지 않는 한 플랫폼 사업자는 책임이 없으며, 계약관계는 이용자 상호 간의 관계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개인 간 거래는 현행법상 플랫폼 사업자에게 책임을 부과하기 어렵기 때문에,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거래 당사자 간 해결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그 해결에 곤란함이 따른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개인 간 전자거래 확대에 따른 분쟁 증가 현상에 따라, 분쟁 사례·관련법은 물론 사전에 분쟁예방을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을 종합한 ‘안전한 개인 간 전자거래 가이드북’을 발간하여 중고거래 이용자는 물론 사업자, 유관기관 등 다양한 이해관계인과 이를 공유함으로써 그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한다.

PART 2

유형별 분쟁사례



1. 계약의 성립

사 례

중고거래를 좋아하는 “변덕이”는 최신 유행하는 삼성 노트북을 구매하기 위해 오랜 근검절약 끝에 어느 정도의 돈을 모아 “오이마켓”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안달이”가 30만원에 판매하는 중고 노트북 판매 글을 보고 계약금 1만원을 송금하고 핸드폰 문자를 통하여 노트북을 구매하였다.

그런데 “변덕이”는 다른 중고거래 플랫폼에 나온 더 저렴한 동일 모델의 노트북이 마음에 들어 “안달이”와 체결한 구매계약을 임의로 해제하자고 한다. 이에 “안달이”는 무슨 소리냐며 펄펄 뛰면서, 정 계약을 해제하고자 한다면 계약금 명목으로 받은 1만원을 돌려줄 수 없다고 큰소리를 치고 있다. 반면, “변덕이”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것도 아니고 계약이 성립한 것도 아니라면서 계약을 없었던 걸로 하자고 한다.

그렇다면 “변덕이”와 “안달이” 사이에 체결된 중고 노트북 구매계약은 성립한 것일까? 성립하였다면 “변덕이”의 주장대로 해제할 수 있을까?

【해설】

우리는 일상생활 즉 사회생활을 하면서 늘 다른 사람과 계약을 맺고 살아간다. 회사원이 고단하더라도 아침 일찍 출근하여야 하는 것은 고용계약을 맺었기 때문이고, 아침에 지하철이나 버스를 타는 것도 운송계약을 맺고 이를 이행하는 것이다.

따라서 현대 사회는 계약을 매개로 권리와 의무가 교차하는 ‘계약 사회’인 것이다. 그런데 이 계약은 반드시 문서로 작성되어야 하는 것도 아니고, 또

계약서에 반드시 당사자의 도장이 날인되어야만 계약이 성립되는 것도 아니다.

계약의 본질적 요소는 당사자 간의 의사표시의 합치(이를 ‘합의’라고 한다)이며, 문서 (계약서)의 작성은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증명하려는 수단에 불과하다.

물론 대부분의 중요한 계약은 문서로 작성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여 법률상으로는 합의만으로도 계약은 그대로 성립하는 것이다. 즉, 계약은 일반적으로 청약*과 승낙**이라는 의사표시의 합치에 의해 성립하게 되고, 성립 이후에는 계약의 구속력이 발생한다.

* 청약 : 일정한 내용의 계약을 체결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일방적·확정적 의사표시

** 승낙 : 청약의 상대방이 계약을 성립시키기 위하여 청약자에 대하여 하는 의사표시

개인 간 거래 플랫폼에서 판매자와 구매자간 그 목적물에 관한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당사자 간 별도의 약정이나 상대방의 채무불이행 또는 사정변경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판매자 또는 구매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다만, 당사자가 계약금을 수수하고 계약을 체결한 경우 아직 이행에 착수하지 아니하였다면, 구매자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판매자는 계약금의 배액을 반환하고 상대방에 대하여 의사표시으로써 각각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를 해약금에 의한 계약 해제라고 한다.

【사례에 대한 해결】

이 사건에서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에 노트북에 대한 매매계약이 체결되었기 때문에 구매자는 임의로 청약을 철회하거나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다만, 아직 이행에 착수하기 전이기 때문에 민법상 해약금 규정(제565조)에 따라 계약을 해제할 수는 있다.

그러면 계약 해제 시 계약을 체결하면서 받은 1만원의 성질을 무엇으로 볼 것인가. 계약을 체결하면서 주고받은 계약금은 대개 계약이 그 내용에 좇아 이행 되면 당연히 매매 대금의 일부가 되어 대금에 충당되지만,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 계약을 해제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금’에 해당하게 된다. 즉 계약금을 교부한 사람은 이것을 포기하고, 이를 수령한 사람은 그 배액을 돌려주고 의사 표시로써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것이다.

결국 이 사건에서 구매자는 계약금 1만원을 포기하고 의사표시로써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리고 계약금은 보통 매매대금의 10%를 주고받지만, 이것은 사회적 관행에 불과하고, 계약금이 반드시 매매대금의 10%라는 법 규정은 없다. 당사자 의사(합의)가 우선이다.

〈‘계약의 성립’ 및 ‘해제’ 관련 민법조항〉

법률	조문내용
민법 제111조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①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 ② 의사표시 자가 그 통지를 발송한 후 사망하거나 제한능력이 되어도 의사표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민법 제527조	(계약의 청약의 구속력) 계약의 청약은 이를 철회하지 못한다.
민법 제543조	(해지, 해제권) ① 계약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의 일방이나 쌍방이 해지 또는 해제의 권리가 있는 때에는 그 해지 또는 해제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 ② 전항의 의사표시는 철회하지 못한다.
민법 제565조	(계약금) ① 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 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 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제551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판례 청약의 의사표시의 요건

계약이 성립하기 위한 법률요건인 청약은 그에 응하는 승낙만 있으면 곧 계약이 성립하는 구체적 확정적 의사표시여야 하므로, 청약은 계약의 내용을 결정할 수 있을 정도의 사항을 포함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대판 2003. 4. 11. 2001다53059).

참고 1 계약의 성립요건으로서의 합의

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있을 것이 요구되고, 이러한 의사의 합치는 해당 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그 본질적 사항이나 중요 사항에 관하여는 구체적으로 의사의 합치가 있거나 적어도 장래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합의는 있어야 하며, 한편 당사자가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표시한 사항에 대하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은 성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대판 2001. 3. 23. 2000다51650).

참고 2 해약금

매도인이 민법 제565조에 의하여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하려면 매수인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하여야 할 것인바, 여기에서 이행에 착수한다는 것은 객관적으로 외부에서 인식할 수 있는 정도로 채무의 이행행위의 일부를 하거나 또는 이행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제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대판 2006. 11. 24. 2005다39594).

참고 3 계약교섭의 부당 파기

어느 일방이 교섭단계에서 계약이 확실하게 체결되리라는 정당한 기대 내지 신뢰를 부여하여 상대방이 그 신뢰에 따라 행동하였음에도 상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체결을 거부하여 손해를 입혔다면, 이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계약자유 원칙의 한계를 넘는 위법한 행위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다(대판 2001. 6. 15. 99다40418).

참고 4 계약교섭의 부당 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

계약교섭의 부당한 중도파기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경우 그러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는 일반이 신의에 반하여 상당한 이유 없이 계약교섭을 파기함으로써 계약체결을 신뢰한 상대방이 입게 된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로서 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된다고 믿었던 것에 의하여 입었던 손해 즉 신뢰손해에 한정된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신뢰손해란 예컨대 그 계약의 성립을 기대하고 지출한 계약준비비용과 같이 그러한 신뢰가 없었더라면 통상 지출하지 아니하였을 비용 상당의 손해라고 할 것이며, 계약체결이 좌절되더라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고 지출한 비용은 여기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대판 2003. 4. 11. 2001다53059).

참고 5 계약의 성립을 기대하고 이행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의 배상범위 포함여부

계약교섭의 부당한 중도파기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배상책임을 지는 것은 계약체결을 신뢰한 상대방이 입게 된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이고, 한편 계약교섭 단계에서는 아직 계약이 성립된 것이 아니므로 당사자 중 일방이 계약의 이행행위를 준비하거나 이를 착수하는 것은 이례적이라고 할 것이므로, 설령 이행에 착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자기의 위험 판단과 책임에 의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지만, 만일 이행의 착수가 상대방의 적극적인 요구에 따른 것이고, 바로 위와 같은 이행에 들인 비용의 지급에 관하여 이미 계약교섭이 진행되고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일방이 계약의 성립을 기대하고 이행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상당의 손해가 상당인과관계에 있는 손해에 해당한다(대판 2004. 5. 28. 2002다32301).



2-1. 매매 목적물 하자

사 례

중고거래를 좋아하는 “심초조”는 최신 유행하는 스피커를 구매하기 위해 “중구마켓”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무심이”가 3년간 사용한 스피커(새 제품 판매가 70만원)를 58만원에 판매한다고 하여, “무심이” 집에서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들으며 스피커 음질 상태를 확인하고 거래를 하였다.

그런데 “심초조”가 스피커를 집에 가져와 그 전원을 켜자 심한 파열음이 나서 제조사의 AS 센터에 문의한 결과 수리비로 27만원이 소요된다는 답을 들었다.

“심초조”는 하자 물품을 판매한 “무심이”에게 매매대금의 환불 또는 수리비용의 부담을 요구하였으나, “무심이”는 위와 같은 증상이 “심초조”가 볼륨 레벨이 과도하게 올라가 있음을 간과한 채 사운드를 출력하는 등의 사용상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매매대금의 환불 또는 수리비용의 부담을 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심초조”는 매매대금을 환불받거나 “무심이”에게 수리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을까?

【해설】

시중에 판매되는 스피커는 일반적으로 대량 제조되어 판매되기 때문에 특정물*이 아닌 종류물**에 해당하지만, 이 사건 매매의 목적물인 스피커는 “무심이” 소유의 중고 스피커이므로 특정물에 해당한다.

** 특정물 : 구체적인 거래에서의 목적물이 당사자의 주관적 의사에 의하여 구체적, 개별적으로 지정되어 있는 물건으로서, 물건의 개성이라는 객관적 기준에 의하여 구별되는 ‘비대체물(또는 불대체물)’, ‘대체물’과 구별된다.

** 종류물 : 구체적인 거래에서의 목적물이 당사자의 주관적 의사에 의하여 종류표지로 지정되어 있는 물건으로서, 물건의 객관적 성질이 아니라 그 종류, 수량, 품질 등에 의하여 지정된다.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민법 제580조 제1항)은 계약 체결 이전의 원시적 하자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계약체결 이후의 후발적 하자는 채무불이행 책임이나 위험

부담의 법리로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태도이다(대판 1996. 12. 10. 94다56098).

즉, 매매 목적물에 원시적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판매자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고,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이란 매매의 목적인 ‘재산권’ 또는 그 재산권의 객체인 ‘물건’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매도인이 매수인에 대하여 부담하는 책임을 일컫는다.

민법은 제570조 내지 제584조에서 매도인의 담보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물건 자체에 하자가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견본이나 광고에 의하여 목적물이 특수한 품질이나 성능을 가지고 있음을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성질이나 성능을 결여하였다면 매도인은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한다.

다만, 이 사건의 경우 ① “심초조”가 “무심이” 집에서 스피커의 상태를 확인하고, 여러 장르의 음악을 들을 당시 스피커에서 잡음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 ② AS 센터에서는 스피커의 회로 및 트위터 고장은 기기 노후로도 볼 수 있고, 조작 실수로 인한 전기 과출력으로도 볼 수 있는데, 이미 고장이 발생하여 정확한 원인은 알기 어렵다고 밝힌 점, ③ 새 제품 가격이 70만원인데 출고한지 3년 밖에 안 된 스피커가 외부적 자극 없이 수리비가 새 제품 값의 거의 절반이 나올 정도로 하자가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스피커는 “심초조”와 “무심이” 사이의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하자가 존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스피커의 하자는 계약체결 이전의 원시적 하자(애초부터 하자가 있는 것)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민법 제580조 제1항에 따른 하자담보책임을 아니라 민법 제390조, 제393조에 따라 채무불이행 책임이 문제된다고 하겠다. 그런데

이 사건 스피커가 고장이 발생하여 수리가 필요한 상황이므로 채무불이행 중 불완전 이행에 해당할 수 있고, 채무불이행 책임의 경우에는 하자담보책임*과 달리 “무심이”에게 고의 또는 과실 즉, 귀책사유가 있어야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다.

* 하자담보책임 : 매매 기타의 유상계약에 있어서 그 목적물에 하자가 있을 때에 일정한 요건 하에 매도인이 부담하는 책임

이 사건을 살펴보면, AS 센터에서도 스피커가 이미 고장 나서 그 하자 원인을 밝힐 수 없다고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무심이”에게 전혀 책임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심초조”가 스피커 상태를 확인하고 구매한 점을 고려하면, “심초조”의 과실이 “무심이”의 과실보다 더 큰 것으로 보인다.

【사례에 대한 해결】

이 사건의 스피커의 하자 원인이 기기 노후인지 아니면 “심초조”의 조작 실수 인지를 정확히 밝히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심초조”의 과실이 더 크다고 보이므로, 수리비 27만원 중 “심초조”가 20만원, “무심이”가 7만원을 부담하는 것으로 분쟁을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2-2. 매매 목적물 하자

사 례

자전거 타기가 취미인 “자린이”는 “봉구마켓”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자덕이”가 사용하던 중고 전기 자전거를 60만원에 구매하기로 하였다.

“자린이”는 자전거 실물을 확인한 뒤 거래하고 싶었으나 “자린이”의 거주지가 지방이어서 택배 거래를 선택하였고, “자덕이”는 자전거의 특성상 운송과정 중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을 사전에 “자린이”에게 알렸다.

택배로 자전거를 수령한 “자린이”는 사진 상 없었던 본체 상단의 찍힌 흔적과 운행에 방해되지 않는 앞바퀴의 부속품 일부가 깨진 흔적을 발견하여, “자덕이”에게 사진 상 보이지 않았던 하자가 발견되었다며 물품하자에 따른 반품요청을 하였다.

“자덕이”는 택배 발송 전 운송 중 파손 가능성에 대하여 미리 알려주었고, 파손 부위는 자전거 타는데 전혀 문제될 것이 없으므로 물품 하자로 보기는 어렵다면서 “자린이”의 반품요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자린이”는 “자덕이”가 자전거의 하자를 숨기고 이를 판매한 사기꾼이라며 경찰서에 “자덕이”를 고소할 생각이다.

【해설】

「민법」 제580조에서 규정한 ‘하자’란, 매매의 목적물이 거래통념상 기대되는 객관적 성질·성능을 결여하거나 당사자가 예정 또는 보증한 성질을 결여한 경우로서, 이 경우에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그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등 담보책임을 부담하는바, 대법원은 위와 같은 하자의 존부는 매매계약 성립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다(대판 2000. 1. 18. 98다18506판결).

한편, 매수인이 「민법」 제580조의 하자담보책임에 기하여 계약해제를 주장할 경우에는 ① 매매계약 당시 매매계약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었다는 사실과

② 위 하자로 인하여 매매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사실, 그리고 ③ 매수인의 해제 의사표시 및 매도인에 대한 위 의사표시의 도달 사실에 관하여 매수인이 이를 주장, 증명하여야 한다.

이 사건에서 매수인인 “자린이”가 매도인인 “자덕이”에게 매매계약의 목적물인 중고 전기 자전거의 반품과 더불어 매매대금의 환불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자린이”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 및 원상회복을 주장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우선 “자린이”가 주장하는 대로 자전거 수령 후 발견된 하자가 과연 「민법」 제580조의 하자에 해당하는가 하는 점은 의문이다. 전기 자전거에 거래 통념상 기대되는 객관적인 성질·성능은 교통수단으로서의 안전한 운행기능이라 할 것인바, 위 하자의 발생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 하는 점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자린이”가 주장하는 본체 상단의 찍힘 흔적과 앞바퀴 부속품 일부가 깨진 점만으로, 그로 인해 전기 자전거를 그 용도에 맞추어 안전하게 운행함에 있어 큰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신청인인 “자린이” 주장의 전기 자전거 하자만으로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결국 피신청인인 “자덕이”는 “자린이”의 주장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에 따라 매매대금을 반환할 의무는 부담하지 않는다고 하겠다.

한편, 「민법」 제462조에 따라 “자덕이”는 이행기의 현상대로 이 사건 매매목적물인 전기 자전거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거래인 온라인 물품거래의 특성상 직거래 뿐만 아니라 택배거래까지 예상하는 것이 이 사건 매매계약의 성질상 필수적이라고 할 것이고, “자덕이”

역시 “자린이”의 거주지를 알고 “자린이”로 하여금 택배배송을 선택하게 하였으므로, 전기 자전거를 택배회사를 통해 배송 이전의 원 상태로 보존하여 “자린이”에게 전달하는 것 역시 “자택이”의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전기 자전거 인도 의무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이 사건에서 택배회사는 “자택이”가 “자린이”에 대한 전기 자전거 배송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사용한 자이프로 「민법」 제391조의 이행보조자에 해당하고, 따라서 위 하자가 택배배송 과정 중 택배회사의 책임으로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자택이”의 책임으로 돌아가게 되며, 그 결과 “자택이”는 이에 대해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채무불이행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다만, 하자담보책임에서와 마찬가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의 목적물인 전기 자전거의 하자만으로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한 경우로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자린이”는 “자택이”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권만을 행사할 수 있을 뿐, 이 사건 매매계약 까지 해제할 수는 없다고 보인다. 또한 “자린이”는 배송 전 운송 중 파손 가능성을 안내 받은 사실이 인정 되므로, 신의칙상 “자택이”의 “자린이”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이를 제한함이 타당하다.

【사례에 대한 해결】

“자택이”는 “자린이”에 대하여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또는 채무불이행책임 중 불완전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만, “자린이”가 제시한 사진을 보면, 찍힘의 정도가 경미하고 앞바퀴 부속 일부는 1만원 미만으로 교체 가능한 부품이므로, “자택이”의 “자린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2만원으로 제한함이 타당하다.



2-3. 매매 목적물 하자

사 례

소설 작가를 준비 중인 “김작가”는 집 밖에서 소설을 쓰기 위해 “호박마켓”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홍당황”이 판매중인 엘지 중고 노트북을 40만원에 매수하기로 한 뒤, “홍당황”과 직접 만나 노트북 작동상태 등 외관 실물을 확인하여 이상 없음을 확인하고 이를 인도받았다.

“김작가”는 공원 등 야외에서 작업을 하던 중 노트북 배터리가 1시간 정도밖에 사용하지 않았는데도 전원의 꺼짐 현상이 발생하였고, 그래서 노트북 제조사의 AS 센터를 방문하여 점검한 결과 노트북의 배터리 충전에 문제가 있어 수리비로 10만원이 든다는 안내를 받았다.

이에 “김작가”는 노트북 배터리 충전의 하자를 이유로 “홍당황”에게 반품을 요청하였는데, “홍당황”은 본인은 주로 집에서 노트북을 사용하여 충전된 배터리를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그동안 잘 사용하여 왔음을 이유로, “김작가” 주장의 배터리 충전 하자는 매도인인 “홍당황”이 책임질 부분이 아니어서 반품은 불가하다면서도 다만, 도의적으로 3만원의 수리비를 부담 하겠다는 입장이다.

“김작가”는 “홍당황”이 노트북 배터리 충전의 하자를 숨기고 이를 판매하였다면서 사기꾼으로 형사 고발하겠다고 주장하는 등 악의적인 행동을 하였고, 이에 “홍당황”은 더 이상 수리비 일부조차 부담할 의사가 없다면서 이 사건 분쟁이 발생하였다.

【해설】

이 사건에서 “홍당황”은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노트북 판매 글을 올리고, “김작가”는 위 플랫폼에서 위 판매 글을 보고 “홍당황”으로부터 이 사건 노트북을 구매하였으므로, 이로써 “김작가”와 “홍당황” 사이에 이 사건 노트북에 관한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

위 매매계약에 따라 매수인인 “김작가”는 매도인인 “홍당황”에게 그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매도인인 “홍당황”은 매수인인 “김작가”에게 그 소유의 중고 노트북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매매 목적물에 원시적인 하자(즉 매매계약 성립 시부터 존재하는 하자)가 있는 경우, 그 하자로 인해 매매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매수인인 “김작가”는 매도인인 “홍당황”을 상대로 민법상 하자담보책임을 물어 이 사건 매매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바, 여기서 ‘하자’란 매매 목적물이 거래통념상 기대되는 객관적 성질·기능을 결여한 경우를 의미한다.

노트북을 구매하는 자가 거래통념상 기대하는 제품의 성질·기능에는 배터리가 정상적으로 충전되며, 또한 배터리를 충전하여 별도의 전력 공급원을 제품에 직접 연결하지 않고도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포함된다고 하겠다.

따라서 이 사건 노트북에 매매계약 성립 시부터 배터리 하자가 존재한다면 이는 거래통념상 기대되는 기능을 갖추지 못한 것이므로, 신청인인 “김작가”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매매대금의 반환을 구할 수 있다고 하겠다.

이에 대하여 “홍당황”은 자신이 이 사건 노트북을 사용하는 동안 “김작가” 주장의 배터리 불량(배터리 충전 하자)을 경험한 사실이 전혀 없고, “김작가”에 대한 노트북 인도 전에는 노트북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였음을 이유로, 신청인인 “김작가” 주장의 배터리 불량은 “김작가”가 노트북을 수령한 후 작동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일 뿐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펴건대, 이 사건 매매계약은 매수인인 “김작가”와 매도인인 “홍당황”이 직접 만나 노트북의 작동 상태를 확인하고 거래 하였으나, “홍당황”은 집에서 전원을 연결하여 사용함으로써 노트북의 배터리가 불량인지 확인하기 어려웠지만, “김작가”는 외부에서 전원 없이 배터리로 노트북을 사용함으로써 노트북 구매 후 배터리 불량을 확인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에서, 만약 위 노트북을 인도할 당시 이미 위와 같은 배터리 충전 불량이었다면, 매수인인 “김작가”로서는 거래통념상 기대되는 객관적인 기능을 가진 노트북이 아님을 이유로 매도인인 “홍당황”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물어 이 사건 매매 계약을 해제한 뒤 이미 지급한 매매대금 전액의 반환을 구할 수도 있다고 하겠다.

다만, 매수인인 “김작가”가 매도인인 “홍당황”에게 민법상 하자담보책임을 물어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기 위해서는, “김작가”가 하자의 존재를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어야 한다.

【사례에 대한 해결】

이 사건에서 매도인인 “홍당황”이 이 사건 노트북을 인도할 무렵 배터리 충전 불량 현상이 이미 발생되어 있었지만, 매수인인 “김작가”가 이러한 하자를 전혀 알지 못하였고, 알 수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하지만 중고거래의 경우 매수인도 어느 정도 스스로 위험을 감수하여야 하고, 거래 대상 물품을 스스로 검수하여야 하는 등의 거래 특성이 있으며, 매도인으로서도 그가 보증하거나 예상한 기능을 갖춘 제품을 제공할 의무가 있는바, 매도인인 “홍당황”이 매수인인 “김작가”에 대한 노트북 인도 당시부터 노트북 배터리 충전 기능이 저하된 상태의 제품을 인도하였다면, “홍당황”은 “김작가”에게 민법상 하자담보책임을 의한 계약 해제 및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점을 감안하여, “홍당황”은 “김작가”에게 7만원의 배터리 수리비를 지급하여 분쟁을 해결함이 타당하다.



2-4. 매매 목적물 하자

사 례

얼마 전 이사를 간 “김황당”은 집안 정리를 하다가 자녀들이 어릴 적 보던 도서전집(100권)을 “대추장터”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김꼼꼼”에게 20만원에 판매하기로 하였다. 성격이 꼼꼼한 “김꼼꼼”은 “김황당”에게 도서의 상태에 대하여 여러 차례 문의하였고, 특이점, 하자 등이 없다는 답변을 받아 직거래로 거래하기로 하였다.

도서를 수령한 “김꼼꼼”이 집에 와서 도서를 꼼꼼히 살펴보니 “김황당”이 판매 시에 말한 것과 달리 찢김, 낙서, 물감 자국, 찌힘 등이 있음을 확인하였고 “김황당”에게 전액 환불을 요구하였다.

이에 “김황당”은 “김꼼꼼”이 주장하는 하자 부분은 완전한 찢김도 아니고 중고 물품 특성상 일부 사용감(낙서, 구김 등)은 감안해야 할 부분이므로 “김꼼꼼”의 주장을 수용할 수 없다면서 이 사건 분쟁이 발생하였다.

【해설】

이 사건에서 “김꼼꼼”은 거래 전 “김황당”에게 매매 목적물인 도서의 상태에 관해 구체적, 반복적으로 문의하였고, 이에 “김황당”은 “김꼼꼼”이 요구한 수준의 성능을 갖추고 있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매 목적물인 도서에는 “김황당”의 답변과 달리 찢김, 낙서, 물감, 구김 등의 하자가 존재하는 바, 이는 “김꼼꼼”이 예정 또는 “김황당”이 보증한 성질을 결여한 하자에 해당 된다.

「민법」 제568조에 따르면,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를 이전하여야 하고,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그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또한 매매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동법 제580조 또는 제393조에 따라 매수인은 손해 배상 청구권이나 매매계약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매수인인 “김꼼꼼”은 매도인인 “김황당”을 상대로 매매 목적물인 중고 도서전집의 하자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한 뒤 이미 지급한 대금의 반환을 구하거나 또는 이를 해제하지 않고 수리비 등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사례에 대한 해결】

이 사건에서 매도인인 “김황당”이 주장하는 “중고거래의 경우 매수인이 어느 정도 스스로 위험을 감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모든 거래에 있어서 인정되는 상식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 사건에서 매수인이 구매 전 수 차례에 걸쳐 매매 목적물인 도서의 하자 부분에 대하여 문의하였고, 매도인이 하자 없다는 답변을 하여 거래가 이루어진 것이기에 매수인이 주장하는 찢김, 낙서 등은 매매 목적물의 하자에 해당하여 “김황당”은 “김꼼꼼”에게 매매대금 20만원을 환불하여 주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2-5. 매매 목적물 하자

사 례

중고거래로 신발 사 모으기를 좋아하는 “아디다”는 “신발나라”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아이키”로 부터 중고 운동화를 10만원에 구매하기로 하였다. 판매 전 “아이키”는 신발의 마모 및 훼손 정도에 등에 대하여 일부 변색이 있고 착용은 10회 미만으로 택배거래를 통해 거래하기로 합의하였다.

신발을 수령한 “아디다”는 신발의 밑창 주위에 마모가 있는 것을 확인하고, 신발 제조 AS 센터에 문의하니 수리가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아디다”는 이에 대하여 하자 부분에 대하여 고지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아이키”에게 전액 환불을 요구하였다.

이에 “아이키”는 판매 전 신발의 상태를 사진으로 보내주었고, 밑창의 마모는 변색에 의한 것으로 거래 전 제공한 사진에도 나타나 있고, 이는 기능상의 하자가 아니기에 환불이 불가하다고 하여 이 사건 분쟁이 발생하였다.

【해설】

이 사건에서 신발의 판매시기와 구입원가, 현재 중고 시가, 이 사건 신발의 현 상태 (오염 부분, 밑창의 상태, 아웃솔 부분의 뜯김 상태 등), 구매 당시 신청인이 피신청인 에게 이 사건 신발의 상태에 관하여 문의한 의사소통 과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신발 10회 착용 중 각 1회 착용 시 얼마나 신었는지가 명확하지 않고, 착용을 하였다는 점을 구매 전 알린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신발의 본질적 기능이나 신청인의 구매 목적 달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아 보인다.

「민법」 제568조에 따르면,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를 이전 하여야 하고,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그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또한 매매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동법 제580조 또는 제393조에 따라 매수인은 손해배상청구권이나 매매계약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본 사건은 해제권 행사가 가능하다고 보여지지 않는다.

이에 따라 매수인인 “아디다”가 매도인인 “아이키”를 상대로 매매 목적물인 중고 운동화의 하자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한 뒤 이미 지급한 대금의 반환을 구하거나 또는 이를 해제하지 않고 수리비 등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사례에 대한 해결】

이 사건에서 매매 목적물이 하자가 있다고 보여 지지는 않지만, 양 당사자가 구매 전 신발의 마모 상태에 대하여 원활한 의사소통이 되었다고 볼 수 없다.

이에 매매 목적물의 중고 시가를 고려하여 “아이키”는 매매대금 중 20,000원을 “아디다”에게 반환하는 것으로 조정한다.

사례 1 매매 목적물 하자 주장에 따른 환불요청

구매자는 2000.0.00. 한정판 0000 텀블러 2개를 중고거래를 통해 70,000원에 구매하였는 바, 물품 수령 후 물품 외관에 흠집 등 하자를 발견하여 환불을 요청하였으나, 판매자는 판매 시 물품 사진에도 보였던 흠집이므로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여 분쟁이 발생하였다.

민법 제580조 제1항, 제575조 제1항에 따라 매매 목적물의 하자로 인하여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매매 목적물이 거래통념상 기대되는 객관적인 성질·성능이나 당사자가 특약에 의하여 예정 또는 보증한 성질을 결여하였는지 여부와 거래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 사건에서 하자의 형태와 발생 부위, 매매 목적물인 한정판 제품의 특수성과 이 사건 매매계약이 이루어진 경위, 조정절차의 특성과 양 당사자의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구매자는 판매자가 판매한 0000 텀블러 세트를 받은 상태 그대로 포장하여 판매자의 주소(반환 받을 주소)로 선불 택배로 발송하고, 판매자는 이와 동시에 구매자의 계좌로 70,00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 결정한다.

사례 2 매매 목적물 하자에 대한 환불요청

구매자는 2000.0.0.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그래픽카드를 315,000원에 구매한 후, 그래픽 카드 수령 즉시 물품의 하자(포트4개 작동불가 등)를 확인하고 환불 요청하였으나, 판매자는 판매 3일 전까지 이상 없이 사용하였음을 이유로 환불이 불가하다고 주장하여 분쟁이 발생하였다.

민법 제580조 제1항, 제575조 제1항에 따라 매매 목적물의 하자로 인하여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매매 목적물이 거래통념상 기대되는 객관적인 성질·성능이나 당사자가 특약에 의하여 예정 또는 보증한 성질을 결여하였는지 여부와 거래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 사건의 경우 그래픽카드라는 매매 목적물의 용도 및 특수성, 하자 발생 부위와 정도, 구매자의 구매 경위 및 환불 요청 경위, 제품 작동 테스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판매자에게 그 책임이 있다고 인정된다. 다만, 매매 목적물의 하자를 입증하는데 한계가 있는 점과 조정절차의 특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당사자의 이해관계를 감안하여 구매자가 판매자로부터 구매한 그래픽 카드의 소유권은 구매자에게 귀속하는 것으로 하되, 구매자는 이 사건 조정이 성립하는 즉시 판매자에게 115,00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 결정한다.

〈‘하자’ 관련 민법조항〉

법률	조문내용
민법 제570조	(매도인의 담보책임) 전조의 경우에 매도인이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때에는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매수인이 계약당시 그 권리가 매도인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안 때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
민법 제580조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①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제575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나 매수인이 하자 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전항의 규정은 경매의 경우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민법 제584조	(담보책임면제의 특약) 매도인은 전 15조에 의한 담보책임을 면하는 특약을 한 경우에도 매도인이 알고 고지하지 아니한 사실 및 제삼자에게 권리를 설정 또는 양도한 행위에 대하여는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판례 **하자의 개념**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공급한 기계가 통상의 품질이나 성능을 갖추고 있는 경우, 그 기계에 작업환경이나 상황이 요구하는 품질이나 성능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 하여 하자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기 위해서는,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제품이 사용될 작업환경이나 상황을 설명 하면서 그 환경이나 상황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제품의 공급을 요구한 데 대하여, 매도인이 그러한 품질과 성능을 갖춘 제품이라는 점을 명시적으로나 묵시적으로 보증하고 공급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만 할 것임은 물론이나,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기계를 공급하면서 당해 기계의 카탈로그와 검사성적서를 제시하였다면, 매도인은 그 기계가 카탈로그와 검사성적서에 기재된 바와 같은 정도의 품질과 성능을 갖춘 제품이라는 점을 보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매도인이 공급한 기계가 매도인이 카탈로그와 검사성적서에 의하여 보증한 일정한 품질과 성능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그 기계에 하자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판 2000. 10. 27. 2000다30554, 30561).

참고 1 **하자담보책임의 법적 성질과 과실상계**

민법 제581조, 제580조에 기한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은 법이 특별히 인정한 무과실책임으로서 여기에 민법 제396조의 과실상계 규정이 준용될 수는 없다 하더라도, 담보책임이 민법의 지도 이념인 공평의 원칙에 입각한 것인 이상 하자 발생 및 그 확대에 가공한 매수인의 잘못을 참작하여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함이 상당하다(대판 1995. 6. 30. 94다23920).

참고 2 **하자의 존부 판단시기**

하자의 존재시기에 대하여, 대법원은 하자의 존부는 매매계약 성립시기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라는 입장으로 계약 성립 후에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는 채무불이행책임이나 위험부담의 법리가 적용된다고 한다.



3-1. 계약취소 및 반품

사 례

각종 경품 이벤트 행사에 참여하기를 좋아하는 “김당첨”은 대방마트에서 개최한 이벤트에 참가하여 최신 삼성 핸드폰에 당첨되었다. “김당첨”은 당첨된 핸드폰을 “마늘마켓”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하여 “김변덕”에게 40만원에 판매하기로 하였다.

“김변덕”은 “김당첨”의 집 앞에서 만나 미개봉 새 상품인 것을 확인한 후 이를 인도받아 집으로 가는 도중 마음이 변하여 “김당첨”에게 계약 취소를 요청하였고, “김당첨”도 “김변덕”에게 판매하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아 계약취소에 동의하였다.

이런 경우 “김당첨”과 “김변덕” 사이에 아무런 약정이 없었다면, 거래물품인 핸드폰의 반환 장소는 어디인가? 만약 택배로 반환할 경우 택배비는 누가 부담해야 하는가?

【해설】

이 사건에서 “김당첨”은 중고거래 플랫폼에 핸드폰 판매 글을 올렸고, “김변덕”은 위 플랫폼에서 위 판매 글을 보고 “김당첨”으로부터 이 사건 핸드폰을 구매 하였으며, 이로써 “김당첨”과 “김변덕” 사이에 이 사건 핸드폰에 관한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매수인인 “김변덕”은 매도인인 “김당첨”에게 핸드폰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매도인인 “김당첨”은 매수인인 “김변덕”에게 매매 목적물인 핸드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다만, 계약취소로 목적물을 반환할 경우 반환할 장소는 목적물이 무엇이냐에 따라 다르다. 당사자의 특약이 없는 한 목적물이 “○○가 1234 다마스”라는 식으로 특정하여 정해진 경우 (‘특정물’ 이라고 한다)에는 계약 당시 그 목적물이 있었던 장소에서 인도하면 된다. 그리고 목적물이 ‘생선 10상자, 맥주 10상자’와

같이 종류와 수량은 정해졌으나, 그 중에서 어떤 것을 넘겨 줄 것인지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경우(‘불특정물’ 또는 ‘종류물’ 이라고 한다)에는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채권자의 현 주소 또는 현 영업소 등에서 목적물을 인도하여야 한다 (지참채무 원칙, 민법 제467조).

【사례에 대한 해결】

이 사건에서 매도인인 “김당첨”과 매수인인 “김변덕”은 당첨된 핸드폰 매매 계약을 체결한 후 그 계약 취소에 합의하였는바, 핸드폰 반환 장소 또는 그 반환 비용에 대한 특별한 약정이 없었으므로, 매수인으로서 이 사건 핸드폰 반환 의무자인 “김변덕”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특정물인 핸드폰이 있었던 매도인인 “김당첨”의 집 앞에서 위 핸드폰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따라서 그 인도에 소요 되는 비용 또한 “김변덕”이 부담하여야 한다.



3-2. 착오로 인한 계약취소

사 례

한정판 물품을 사 모으기를 좋아하는 “김리치”는 맥주회사와 보온물품 제작 및 판매 업체의 특별 한정판 아이스박스를 59,900원에 구매한 후, 버섯장터 중고거래 플랫폼에 한정판 프리미엄 가격을 더해 75,000원에 판매한다는 게시 글을 작성하여, “이염치”에게 판매하였다.

판매 2일 이후 “김리치”는 판매한 아이스박스 내 87,000원 상당의 한정판 맥주잔 1개, 맥주진공 보관통 2개(이하 ‘맥주잔 등’)를 넣은 채 판매한 것을 알게 되었고, “이염치”에게 맥주잔 등의 반환을 요청하였지만, “이염치”는 아이스박스 내 보관되어 있던 맥주잔 등을 사은품으로 알고 사용하였다고 답변하였다.

“김리치”는 “이염치”에게 수고비 명목의 3만원 지급을 조건으로 해당 물품의 반환을 요청 하였다.

이에 “이염치”는 “김리치”에게 맥주잔 등을 반환하려고 하였으나, “김리치”는 돌연 해당 맥주잔 등의 가격 87,000원의 지급을 주장하고 있다.

【해설】

이 사건에서 아이스박스 안에 있던 물품은 이 사건 매매 목적물에 포함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아이스박스 안에 있던 물품의 소유권까지 피신청인에게 이전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한편 “김리치”는 아이스박스 안에 다른 물품이 들어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난 후, “이염치”에 대한 수고비 명목으로 30,000원의 지급과 반환비용의 신청인 부담을 조건으로 맥주잔 등의 반환을 요구하였고, “이염치”는 이에 동의함으로써 맥주잔 등의 반환 방법 및 조건 등에 관하여 별도의 합의가 성립하였다.

그런데 “김리치”는 이후 다시 의사를 변경하여 “이염치”에게 맥주잔 등의 대금 87,000원의 지급을 요구하였다. 당사자 사이에 이미 위와 같은 맥주잔 등의

반환 방법 및 조건 등에 관한 합의가 성립한 이상 “김리치”의 의사결정 계기나 그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일종의 동기의 착오에 불과하여 “김리치”의 일방적인 의사로 이를 취소할 수 없다.

참고 관련법률

「민법」 제568조에 따르면,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를 이전하여야 하고,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그 대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동법 제109조에 따르면,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를 한 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이를 취소할 수 있다.

【사례에 대한 해결】

이 사건에서 “김리치”가 “이염치”에게 수고비 30,000원을 지급하고 맥주잔 등을 돌려받는 것이 법률상 타당하나, “이염치”가 일부 양보하여 “김리치”의 부담으로 맥주잔 등을 배송해 주되 “김리치”가 애초 약속했던 수고비 중 절반인 15,000원만을 지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참고 지참채무

지참채무란 채무자가 목적물을 채권자의 주소에서 이행하여야 하는 채무이다. 특정물의 인도는 채권성립 당시에 그 물건이 있던 장소에서 하여야 하지만(제467조 제1항), 그 밖의 채무변제는 채권자의 현주소에서 하여야 한다(제467조 제2항).

따라서 종류채무는 원칙적으로 지참채무에 속한다. 한편 변제의 제공은 채무의 내용에 좇은 ‘현실 제공’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채권자가 미리 변제받기를 거절하거나 채무의 이행에 채권자의 행위를 요하는 경우에는 변제준비 및 그 완료를 통지하고 그 수령을 최고하는 방식의 ‘구두제공’으로 하면 된다(제460조).

따라서 종류채무에서는 채무자가 채권자의 주소에서 현실적으로 변제의 제공을 한 때(제460조 본문), 즉 목적물이 채권자의 주소에 도달하고 채권자가 언제든지 수령할 수 있는 상태에 놓여진 때에 비로소 특징이 된다.

채무자가 인도할 목적물을 분리하거나 또는 우편·철도 등의 운송기관에 위탁하여 발송하는 것만으로는 특정이 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발송 후 도달 전에 그 물건이 불가항력으로 멸실한 경우에도, 채무자는 그 종류에 속하는 다른 물건을 인도하여야 한다. 한편 종류채무에서도 채권자가 미리 변제방기를 거절한 경우에는 구두의 제공, 즉 변제준비의 완료 및 그 완료를 통지하고, 그 수령을 최고함으로써 특정이 된다(제460조 단서).



4-1. 계약해제

사 례

명품 가방을 좋아하는 “김된장”은 명품마켓에서 “김변덕”이 한 번만 사용하여 새 것과 같은 가방이라고 올린 판매 글을 보고 중고 명품 가방 샤을래백을 8,000,000원에 거래하였다. 거래한 명품 가방의 원 판매가는 4,000,000원이었으나 품질되어 4,000,000원의 프리미엄이 붙은 것으로 “김된장”은 가방의 정품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감정업체에 문의하였다.

감정업체의 감정 결과 정품은 맞으나 흠집 및 마모가 있다는 회신을 받은 구매자 “김된장”은 판매자 “김변덕”에게 환불을 요청하였고, 판매자 “김변덕”은 택배로 물품을 발송하면 수령 후 환불해 주겠다고 말하였으나, “김된장”은 “김변덕”이 환불금을 보내주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택배로 가방을 보내주기가 어렵다며 직접 만나 가방을 반품하겠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자신을 믿지 못하는 “김된장”의 태도에 화가 난 “김변덕”은 시간적으로 여유가 없는 상황에서 “김된장”의 일방적인 주장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여 환불을 거부한다고 주장하면서 분쟁이 발생하였다.

【해설】

이 사건은 개인 간 거래에서 발생한 분쟁으로 당사자의 합의에 따른 계약의 해제와 매매 목적물의 하자로 인한 해제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먼저, 계약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성립하고, 일단 계약이 성립한 이상 당사자는 계약의 효력을 받는다. 가령 매매에서, 매도인은 매매 목적물에 관한 재산권을 이전해 줄 의무를 부담하고, 매수인은 대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

따라서 매도인 김변덕과 매수인 김된장 사이에는 매매 목적물인 샤을래백을 800만 원에 매매하는 계약이 체결되었으므로, 김변덕은 김된장에게 샤을래백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해주어야 하고, 김된장은 김변덕에게 대금 800만원을 지급하여야 하는바, 당사자는 위 매매계약에 따른 의무를 모두 이행하였다.

이때, 김된장은 김변덕에게 환불을 요청하였고, 이러한 요청을 받은 김변덕은 김된장에게 환불을 약속하였는바,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의 이러한 환불 약속이 법률상 계약의 합의해제에 해당하는가의 문제가 있다. 합의해제가 성립하면, 매수인 김된장은 수령한 샤올래백을 반환하고, 매도인 김변덕은 수령한 대금 800만원을 반환하여야 한다.

그런데 합의해제란 계약 당사자 사이의 해제에 관한 의사표시의 합치로서, 수령한 매매 목적물이나 대금의 반환뿐만 아니라 그 이행방법이나 시기 등도 매우 중요한 요소이므로 매매계약의 성질이나 체결 경위, 매매 목적물의 종류나 크기, 매매대금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본질적 사항이나 중요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 등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 사건에서 보건대, 김변덕은 ‘택배로 물품을 발송하면 수령 후 환불해 주겠다’고 하였으나, 김된장은 ‘직접 만나 가방을 반품하겠다’고 하였으므로, 양 당사자 사이에 위 매매계약이 합의해제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어서 매매계약에서의 담보책임에 따른 해제에 대하여 보자. “김된장”과 “김변덕”은 샤올래백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양 당사자는 일단 위 매매계약의 효력에 구속된다. 다만, 해제권을 취득한 당사자는 의사표시로써 매매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민법 제543조), 해제의 효력이 발생하면 당사자는 계약의 구속력으로부터 해방되는바, 민법이 규정하고 있는 해제권의 발생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으나 이 사례의 경우에는 민법 제580조에 의한 담보책임으로서의 해제가 문제된다.

다시 말하면, 매매 목적물 하자과 관련하여 제580조에서 규정한 ‘하자’란, 매매의 목적물이 거래통념상 기대되는 객관적 성질·성능을 결여하거나 당사자가 예정 또는 보증한 성질을 결여한 경우로서, 대법원은 위와 같은 하자의 존부는 매매계약 성립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이 사례에서 “김된장”은 “김변덕”과 직접 만나 매매 목적물인 샤올래백을 직접 건네받았으므로 육안으로 관찰할 수 있는 흠집이나 마모 등에 대해서는 당시 “김된장”이 이를 확인할 기회가 있었다고 볼 수도 있고, 감정업체의 감정 결과 흠집 및 마모가 발견된 점에 비추어 일반인인 “김된장”이 이를 쉽게 육안으로 확인할 수는 없었다고 볼 수도 있다.

다만, 이 사례를 더욱 일반화시키면, “김된장”은 현장에서 직접 샤올래백을 건네 받았고, 신제품이 아니라 중고품인 샤올래백을 구매하는 것이므로, “김된장”은 이를 좀 더 주의 깊게 관찰하여 흠집이나 마모 상태를 확인하였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샤올래백의 하자가 구매 전에 있었다는 사실은 “김된장”이 이를 증명 하지 않는 한 “김된장”이 주장하는 매매 목적물의 하자에 대하여 매도인인 “김변덕”에게 그 책임을 묻기는 어려워 보인다.

참고 관련법률

「민법」 제548조(해제의 효과, 원상회복의무)에 따르면,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다. 합의 해제의 경우, 원상회복시 중요 목적물, 환불대금, 계약 해제시 발생한 비용의 부담주체 등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가 이루어져야 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할 수 있다.

【사례에 대한 해결】

이 사건에서 “김변덕”이 “김된장”에게 명품 가방을 환불해 줄 의무는 없으나, 감정적이고 소모적인 다툼으로 인한 시간과 비용의 낭비를 막고 분쟁을 원만히 해결하고자 하는 당사자들의 의사를 고려하여 명품 가방은 판매자 “김변덕”에게 귀속하고, 구매자 “김된장”은 “김변덕”에게 200,00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4-2. 계약해제

사 례

고전 게임을 좋아하는 “김확실”은 게임의 손맛을 향상시키기 위해 게임나라 플랫폼을 통해 “김꼼꼼”이 판매하는 중고 게임기 컨트롤러를 택배 거래로 100,000원에 구매하였다.

매사에 꼼꼼한 “김꼼꼼”은 물품 발송 전 작동 상태를 동영상으로 촬영한 후 물품을 보냈고, 물품을 수령한 “김확실”은 게임기를 작동하기 전 컨트롤러 하단 볼트에 녹이 있어 침수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컨트롤러 내부를 분해하였는데, 내부에도 녹이 있어 물품 하자를 이유로 “김꼼꼼”에게 환불을 요청하였다.

환불에 동의하여 물품 반품을 받은 “김꼼꼼”은 제품의 이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수령 시부터 게임기 작동 시까지의 과정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고, 게임기 컨트롤러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아 “김확실”이 녹이 쓴 내부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분해하는 과정에서 고장을 일으킨 것으로 보고 환불을 거부하여 분쟁이 발생하였다.

【해설】

이 사례에서 첫째, 매매 목적물의 물품에 녹이 있는 하자는 인정할 수 있으나 게임기 컨트롤러가 중고물품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이와 같은 녹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물품의 기능에 하자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판매자 “김꼼꼼”은 물품 발송 전 작동상태를 동영상으로 촬영한 후 물품을 보냈으며, 구매자 “김확실”은 게임기를 분해하기 전에 게임기의 작동 여부에 대한 확인을 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김확실”은 게임기 컨트롤러에 녹이 있음을 이유로 민법 제580조에서 정한 담보책임으로 계약 해제를 주장할 수는 없다.

둘째, 판매자와 구매자 양 당사자가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기로 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 보면, “김확실”이 녹이 있음을 이유로 하여 환불요청을 하였고, “김꼼꼼”이 이를 승낙하여 물품을 반환 받았으므로, 위 매매계약은 민법 제543조에 따라 합의해제 되었다고 볼 수 있다.

계약의 해제는 계약이 체결되어 효력이 발생한 후 그 계약의 효력을 소급적으로 소멸시키는 것을 말하는바, 해제권은 당사자의 약정에 의하여 발생하는 경우와 법률의 규정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사건에서는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을 당사자의 합의로써 실효시키는 합의해제로서 약정해제에 해당된다.

약정해제의 효과인 원상회복의무로서, 구매자인 물품 수령자는 수령한 물품 및 사용이익을 반환하여야 하고 이를 반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액을 반환하여야 하며, 이와 상환으로 판매자는 대금 및 이에 대한 법정이자를 반환하여야 하므로, 구매자 “김확실”은 판매자 “김꼼꼼”에게 중고 게임기 컨트롤러를 반환하여야 하고, 이와 상환으로 판매자 “김꼼꼼”은 구매자 “김확실”에게 대금 10만 원을 반환하여야 한다 (사용이익이나 법정이자 는 고려하지 아니하였다).

참고 **관련법률**

「민법」 제548조(해제의 효과, 원상회복의무)에 따르면,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다.

다만 “김꼼꼼”이 이 사건 물품을 반환받는 과정에서 물품이 작동하지 않는 하자를 발견하였고, 이러한 하자는 “김확실”이 일방적으로 물품을 분해함으로써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김확실”은 “김꼼꼼”에게 이에 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보인다.

참고 **관련법률**

「민법」 제390조는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이라는 제목 하에,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 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손해의 발생은 수리하기 전이라도 재물이 손괴된 때에도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는지 여부는 사회통념에 비추어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사례에 대한 해결】

이 사건에서 작동불능의 하자는 매매계약의 이행과정에서 발생하였음은 명백하지만, “김확실”의 일방적인 물품 분해로 인한 작동불능의 가능성이 높다고 보일 뿐 이에 관하여 오로지 그의 책임으로 돌릴 수는 없으므로, 작동불능에 대한 수리비 상당액의 손해를 일방에게 부담시키는 것보다는 쌍방이 양보하는 것이 분쟁해결에 적합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게임기 컨트롤러 수리비용 50,000원을 지급하고, 게임기 컨트롤러는 판매자인 “김꼼꼼”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조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5. 위험부담

사 례

집에서 게임하며 노는 것을 좋아하는 “김백수”는 안전마켓에서 “김꼼꼼”이 개봉만 하여 새 것과 같다는 컴퓨터 그래픽카드 판매 글을 보고 300,000원에 택배거래를 하였는데, 물품을 수령한 “김백수”는 박스 개봉 후 물품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그래픽카드가 파손되어 있음을 발견하고 “김꼼꼼”에게 하자가 있음을 주장하면서 반품을 요청하였다.

“김꼼꼼”은 물품을 포장하여 발송할 때에는 정상적이었다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 발송 시 “김백수”에게 물품을 촬영한 사진을 보낸 점을 들었고, 배송 과정에서 파손이 되었을 것 같다는 “김백수”의 주장에 대하여는 택배 사에 사고접수 후 확인한 결과 외부에 파손 흔적이 없어 내부물품 충돌로 인하여 물품의 파손이 발생하기가 힘들다는 답변을 들었다.

“김꼼꼼”은 “김백수”가 물품을 개봉하는 상황을 직접 확인한 것이 아니기에 “김백수”의 주장이 모두 사실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박스가 매우 커서 다른 물품과 같이 던질 수 있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택배 사의 의견을 믿는다고 하였다.

“김꼼꼼”의 주장대로 박스 내부에 여유 공간이 있기는 하지만 구성품들이 서로 움직일 수 있는 정도는 아니고, 새 제품과 마찬가지로 완충제를 여러 겹으로 포장하여 충격을 방지하였기 때문에 “김꼼꼼”은 물품 파손으로 인한 환불을 요청하는 “김백수”의 주장을 거부하면서 분쟁이 발생하였다.

【해설】

이 사건에서 당사자들의 주장과 제출 증거를 볼 때, “김꼼꼼”이 물품을 발송할 당시까지의 하자 여부, “김백수”가 물품을 수령한 이후의 하자 여부에 대하여 전문가의 감정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하자 발생 원인이 어느 당사자의 책임영역 하에 발생한 것인지 확인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민법 제568조 제1항(매매의 효력)에 따르면 동산매매에서 매도인은 목적물의 재산권을 이전하여야 하고, 동법 제188조 제1항(동산물권양도의 효력)에 따르면 동산의 경우 인도함으로써 소유권이 이전되므로, 매도인은 매매목적물인 동산을

매수인에게 인도하여야 매매계약상의 재산권이전이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민법 제537조에 따르면, 쌍무계약인 매매계약에서는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당사자 쌍방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가 위험을 부담하여 그 대금을 청구할 수 없다. 따라서 물품의 하자가 양 당사자의 책임 없는 사유에 기하여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위험은 매도인인 “김꼼꼼”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것이다(가사 배송 과정에서 택배사의 과실로 이 사건 물품 하자가 발생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마찬가지로, 다만 “김꼼꼼”이 면책 등의 약정이 없다면 택배사에 대해 과실을 주장, 증명하여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참고 위험부담(채무자위험부담주의)

쌍무계약의 일방의 채무가 채무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불능이 되어 소멸한 경우에, 그에 대응하는 타방의 채무의 운명은 어떻게 되느냐가 문제된다.

일반적인 채권·채무의 독립성과 쌍무계약의 견련성(서로 관련·관계가 되어 있다는 뜻)이라는 두 성격의 조화를 꾀하려는 제도로써 채무의 후발적 불능을 둘러싸고 일어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 위험부담 법리이다.

예컨대 가옥을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에 그 목적인 가옥이 지진으로 멸실된 경우에, 쌍무계약인 매매계약에서 생긴 일방의 채무인 가옥인도 채무는 이행불능으로 소멸된다. 이 경우 다른 일방이 부담하는 대금지급 채무의 운명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 만약 운명을 함께 하여 소멸된다고 하면 매도인은 대금을 청구할 수 없게 되므로 쌍무계약의 일방의 채무가 소멸된다고 하는 손실은 그 소멸된 채무를 부담하는 채무자(매도인)가 부담하게 된다. 이에 반하여 만약 다른 채무는 여전히 존속된다고 하면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대금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위의 손실은 채권자(매수인)의 부담이 된다. 전자를 채무자위험부담주의라고 하고, 후자를 채권자 위험부담주의라고 한다.

우리나라는 민법 제537조에 따라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규정하여 채무자 위험부담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사례에 대한 해결】

이 사건은 민법에 따르면 물품의 하자가 양 당사자의 책임 없이 발생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채무자가 위험을 부담하여야 하므로 그래픽 카드는 판매자 “김꼼꼼”에게 반환하고, 구매자 “김백수”는 “김꼼꼼”에게 300,000원을 반환하는 것으로 조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6-1. 미성년자의 법률행위

사 례

이제 막 대학에 입학한 미성년자 “김신입”은 대학에 들어간 자유를 만끽하기 위해 유희비가 필요하여 부모님이 목숨과 같이 아끼는 시가 50만원 상당의 결혼 예물 24K 금반지를 대한 나라 플랫폼을 통해 “김어설”에게 300,000원에 판매하였는데, 반지를 구매한 “김어설”은 거래당시 “김신입”이 미성년자인 것을 알지 못하였다.

결혼 예물 금반지가 없어진 것을 알게 된 “김신입”의 부모님은 구매자 “김어설”을 찾아가 “김신입”은 미성년자이므로 위 계약을 취소한다면서 환불을 요청하였다.

“김신입”의 부모님 주장은 타당한가?

【해설】

대한민국에서 사람은 만 19세에 이르면 성인이 되며, 따라서 그 전까지는 미성년자이다.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는 그 법률행위자가 미성년자라는 이유만으로 취소할 수 있음이 원칙이다. 심지어 이러한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의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해서도 대항할 수 있다. 이는 사회 경험이 적고 합리적 의사 결정 능력이 부족하여 불리한 계약을 맺을 가능성이 큰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위와 같은 취소권은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은 물론 미성년자 본인도 이를 행사할 수 있다.

〈‘미성년자’ 관련 민법조항〉

법률	조문내용
민법 제5조	(미성년자의 능력) ①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민법 제7조	(동意的 허락의 취소) 법정대리인은 미성년자가 아직 법률행위를 하기 전에는 전 2조의 동意的 허락을 취소할 수 있다.

〈제한능력자(미성년자)와 거래한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한 민법조항〉

법률	조문내용
민법 제15조	(최고권) 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이 제한능력자 측에 대해 한 달 이상의 기간에 대해 계약의 취소 여부를 물었을 때 확답이 없으면 추인으로 간주되어 거래 확정
민법 제16조	(철회권) 미성년자와 거래(계약)한 상대방은 해당 계약에 대한 추인이 있을 때까지 계약에 대한 자신의 의사를 철회할 수 있다(단, 계약 당시 미성년자임을 알고 있었다면 철회할 수 없다).
민법 제17조	(제한능력자의 속임수에 의한 취소권의 부인) 제한능력자가 속임수로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제한능력자 측의 취소권 배제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라도 취소할 수 없는 민법조항〉

법률	조문내용
민법 제6조	(처분을 허락한 재산) 법정대리인이 범위를 정하여 처분을 허락한 재산은 미성년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민법 제7조	(동意的 허락의 취소) 법정대리인은 미성년자가 아직 법률행위를 하기 전에는 전 2조의 동意的 허락을 취소할 수 있다.
민법 제8조	(영업의 허락) ①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으로부터 허락을 얻은 특정한 영업에 관하여는 성년자와 동일한 행위능력이 있다. ② 법정대리인은 전항의 허락을 취소 또는 제한할 수 있다. 그러나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민법 제6조의 “법정대리인이 범위를 정하여 처분을 허락한 재산”의 예는 용돈 등을 들 수 있다. 과거에는 단순히 “범위” 외에도 재산의 목적 또한 고려하였다. 그러나 이는 거래의 안정성을 해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되어 현재는 목적을 고려하지 않는다. 즉 재산의 처분이, 처분을 허락할 당시에 정해진 목적에 반하더라도 용인이 된다.

예를 들어, 미성년자인 대학교 1학년 학생이 부모님께 등록금을 받은 뒤 이를 유흥에 다 써버렸다고 하자. 그러나 제3자에 대한 보호 및 거래 안전을 위하여 비록 등록금의 금액이 수백만 원에 달한다 할지라도 유흥을 위한 소비행위(법률 행위)가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임을 이유로 이를 취소할 수 없다.

나아가 처분을 허락받은 재산을 처분하여 취득한 재산을 다시 처분한 경우에도 추가적인 법정대리인의 허락을 필요로 하지 아니함이 원칙이다. 그러나 취득 재산의 가치가 처음에 허락한 재산을 크게 상회할 경우는 허락을 요한다.

【사례에 대한 해결】

이 사건은 미성년자인 “김신입” 본인은 물론 “김신입”의 법정대리인인 부모도 “김신입”의 법률행위(반지 매도행위)가 미성년자의 행위임을 이유로 이를 취소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이에 “김어설”은 금반지를 “김신입” 부모에게 돌려주고, “김신입”측은 “김어설”에게 수령한 대금을 돌려주어야 한다. 다만, 도박이나 유흥 등으로 이를 소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2. 미성년자의 법률행위

사 례

박영감이 뒤늦게 얻은 외동아들 “박아치”는 소문난 개망나니이다. 이제 15세인 중학교 3학년 미성년자인데 하라는 공부는 안하고 놀러 다니기만 한다.

아버지가 용돈을 주지 않자 “박아치”는 시가 500만원인 아버지의 명품 골프채를 사파마켓을 통하여 “김버리”에게 10만원에 팔고는 그 돈을 가지고 가출해 버렸다. 골프채를 구매한 “김버리”는 “박아치”가 미성년자인 것을 알았지만 “박아치”가 아버지가 병원에 입원하여 승낙을 얻었다고 하는 바람에 믿었다는 것이다.

“박아치”의 법률행위, 즉 아버지의 재산을 처분한 행위는 아버지가 취소할 수 있는가?

【해설】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는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부모 또는 후견인)이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미성년자가 상대방에게 성년자라고 속였거나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있다고 속인 경우(이를 ‘제한능력자의 속임수 행위’라고 한다)에는 미성년자와 거래한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해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의 취소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나 단순히 말로써만 속인 경우에는 위에서 말하는 ‘속임수 행위’라고 할 수 없고, 나이를 속이기 위해 호적등본을 위조하여 제시하거나, 위조된 법정대리인의 동의서를 제시하는 등 적극적인 경우만을 속임수 행위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박아치”가 아버지의 재산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아버지의 동의를 있었다고 말로만 속인 경우에는 적극적인 속임수 행위로 볼 수 없으므로, 박영감은 미성년자인 “박아치”의 법률행위를 취소한 뒤 골프채를 되찾을 수 있다. 다만, 박아치가 수령한 대금은 현존이익의 한도에서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한능력자 관련 민법조항〉

법률	조문내용
민법 제17조	<p>(제한능력자의 속임수) ① 제한능력자가 속임수로써 자기를 능력자로 믿게 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p> <p>② 미성년자나 피한정후견인이 속임수로써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있는 것으로 믿게 한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p>



7. 주물과 종물

사 례

부동산 경기가 다시 되살아나면서 정년퇴직을 앞두고 있는 “김정년”은 공인중개사 공부를 하기 위해 동산마켓을 통해 “김주물”에게 공인중개사 수험서를 10,000원에 구매하였다.

문제지를 받은 “김정년”은 공부를 하기 위해 문제를 풀어 정답을 맞춰보려고 하는데 해설지가 누락된 것을 발견하고 “김주물”에게 해설지를 보내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런데, 판매자 “김주물”은 해당 문제집은 해설지가 별책 부록인데 본인은 해설지가 없어서 보내줄 수 없다고 하였고, 이에 “김정년”은 환불을 요청하였다.

“김정년”의 주장은 타당한가?

【해설】

민법 상 물건은 명확성과 거래의 안전을 위해 단일물을 원칙으로 한다. 어떤 물건이 있고, 그 물건의 일상적인 사용을 위해서 그 물건에 다른 물건을 부속시켰을 때, 민법은 주된 물건을 ‘주물’이라 부르고, 부속된 물건을 ‘종물’이라 부른다.

종물로 인정되려면 다음의 네 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종물은 주물의 상용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일시적 용도에 쓰이는 물건은 종물이 아니고, 주물의 효용과는 직접 관계가 없는 물건, 예컨대 책상·식기 등은 가옥의 종물이 아니다.
2. 종물은 주물에 ‘부속’된 것이어야 한다. 이것은 주물과 종물이 어느 정도 밀접한 장소적 관계에 있는 것을 말한다. 한편 주물의 소유자가 부속시켰음을 요하지 않는다. 예컨대 임차인이 주택에 부속시킨 물건도 소유자가 이를 매수하면 주택의 종물이 된다.

3. 종물은 주물로부터 '독립된 물건'이어야 한다. 주물의 일부이거나 구성부분을 이루는 것은 종물이 아니다. 독립된 물건이면 되고 동산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예컨대 주택에 딸린 광은 주택에 대한 종물로서 부동산이다.
4. 주물과 종물은 '동일한 소유자'에 속하는 것이어야 한다.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르게 되는데, 양자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종물에 이유 없이 소유권을 일게 되기 때문이다.

이처럼 물건을 주물과 종물로 구별해 보는 실익은 주물의 처분이 있었을 때 종물의 법률적 운명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민법은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라고 규정하여 운명을 같이 하도록 하고 있다. 이 규정이 있음으로 해서 예컨대 배를 산 사람은 비록 노를 산 것은 아니지만 노까지도 인도받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민법의 이 규정이 있어도 당사자가 별도의 명확한 의사표시를 하였을 때는 이에 따라야 한다.

이 사건에서 문제집과 해설지는 소위 주물과 종물의 관계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문제집을 샀다면 해설지까지 산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주물과 종물 관련 민법조항〉

법률	조문내용
민법 제100조	(주물, 종물) ① 물건의 소유자가 그 물건의 상용에 공하기 위하여 자기 소유인 다른 물건을 이에 부속하게 한 때에는 그 부속물은 종물이다. ②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

PART 3

분쟁예방방법 및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1. 개인 간 전자거래 분쟁예방 방법



개인간거래 (C2C)

이것만 주의하면
분쟁예방!

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반품, 환불 등 거래조건에 대한 확인
상품, 거래조건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여 분쟁 예방

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물품 상태 확인
개인간 거래시 상품 품질 및 작동상태 등 물품 상태 재검토

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안전한 안전결제 시스템 이용
비대면 거래시 안전결제(에스크로)를 이용한 결제시스템 이용

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직거래 방식 거래
가능하면 직접 대면하여 상품 확인 후 거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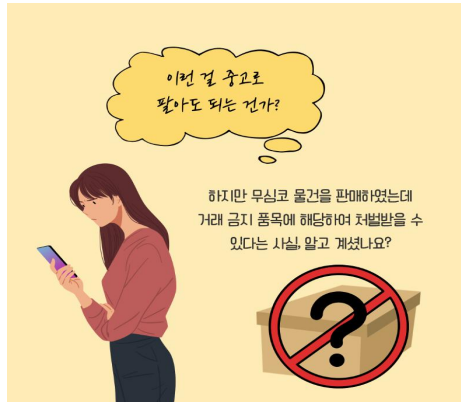
분쟁이 발생했다면? ☎ 상담전화 : 국번없이 118(ARS 5번)
🌐 홈페이지 : www.ecmc.or.kr

2. 팔기 전에 알아두자! 중고거래 금지 품목

출처 : 법무부




“혹시... 당근이세요?”



요즘 당X마켓 등 중고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중고 거래를 하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하지만 무심코 물건을 판매하였는데 거래금지 품목에 해당하여 처벌받을 수 있는데요. 과연 대표적으로 어떤 품목들이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대표적인 중고거래 판매금지 품목

뜯었는데 손은 안 대서 팔아요~



- 식품편 -

1. 영업 신고 없이 개인이 만든 식품
2. 포장을 이미 개봉한 식품
3. 주류(무알콜 주류 포함)

음식을 먹진 않았는데 포장지만 뜯어서 아까운 마음에 팔까 싶은 생각, 한 번쯤은 있지 않았나요?

혹은 반찬을 집에서 만들었는데 양이 너무 많아 이걸 동네 사람들에게 판매할까 싶은 생각도 들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포장을 뜯은 식품을 거래할 시 식품위생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개인이 직접 만든 청, 반찬들을 판매하는 것 또한 위법입니다.

대표적인 중고거래 판매금지 품목


- 의료편 -

4. 건강기능식품

5. 한약 및 의약품

6. 의료기기

너무 많이 사서
싸게 팔아요~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것도 불법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무심코 중고 거래 사이트에 홍삼을 판매하고자 올렸다가 자신도 모르게 불법 거래를 하게 되는 셈이 될 수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은 판매업을 등록한 사람만 판매를 할 수 있어
이를 어길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무료 나눔도 마찬가지로 금지입니다.

따라서 건강기능식품은 반드시 공식 업체에서 구매를 해야 합니다.

의료기기 또는 중고 의료기기를 반복·계속적으로 거래하려는 경우
「의료기기법」에 따라 의료기기 판매업을 신고한 영업자만 판매(온라인 판매 포함)가
가능합니다.

「의료기기법」 제17조에 따라 의료기기 판매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영업소 소재지의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판매업 신고를 하여야 하고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안전한 의료기기 또는 중고의료기기를 구매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기 판매업을 신고한 영업자로부터 구매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대표적인 중고거래 판매금지 품목

집에서 만든 비누 팔아요~



- 화장품 및 생활화학제품편 -

7. 화장품 샘플

8. 수제 비누

9. 수제 향초

「화장품법」에 의하면 판매 목적이 아닌
제품을 홍보하거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소비자가 미리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화장품
샘플은 그 누구도 판매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화장품 샘플을 중고로 판매하면 안 됩니다.

적발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개인이 향초·디퓨저를 제작해 판매는 물론 선물하는 행위도 불법이란 사실, 알고 계셨나요?

향초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에 해당하는데요.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시험 기관 승인을 받아야 판매 또는
증여(선물)할 수 있습니다. 향이 있는 제품은 호흡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모르기
때문에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른 엄격한 검사 승인 절차를 거칠 수밖에 없습니다.

적발 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피부에 사용하는 비누는 이전까지는 공산품으로 분류되었으나,

2019년 12월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화장품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수제 비누를 판매하기 위해서는 화장품 제조업 허가를 받아야 하며 화장품 책임판매업
등록을 해야만 판매가 가능합니다.

허가 없이 판매 및 거래를 한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단, 설거지 비누, 세탁비누, 반려동물 비누는 해당하지 않음).

대표적인 중고거래 판매금지 품목

시력 0.3용
비개봉 렌즈 팔아요~



-기타-

10. 종량제 봉투

11. 도수 있는 렌즈 / 안경

12. 반려동물 / 곤충

13. 헌혈증

개인이 허가 없이 종량제 봉투를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것은 불법인데요.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종량제 봉투는 지자체와 대형 계약을 한 사람만 판매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위반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도수 있는 렌즈 혹은 안경 또한 중고 거래 금지 품목입니다.

도수가 있다면 이는 의료기기로 분류되기 때문입니다.

안경 혹은 렌즈를 판매하는 행위는 안경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만이 판매가
가능하며 인공눈물, 비강 세척액 등 또한 의약품으로 분류되어 온라인 거래 금지
품목입니다.

하지만 도수가 없다면 중고 거래가 가능합니다.

이외에도 반려동물은 물론 생명에 있는 모든 동물, 곤충, 물고기 등은 중고 사이트에서 분양
및 판매가 불가능합니다.

헌혈증은 「혈액관리법」에 따라 양도는 가능하지만, 매매는 불법이라는 사실도 알아두세요!



3. 인터넷쇼핑몰을 통한 판매금지 또는 판매제한 물품

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 인터넷쇼핑몰에서 판매가 금지되거나 일정한 경우에 한하여 판매가 가능한 대표적인 물품 사례

구분	물품류	비고
판매금지 물품	담배	온라인에서는 판매 불가
	마약류	
	의약품	
	모의총포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총격기·석궁	
	도수 있는 안경, 콘택트렌즈	판매 불가 (온라인, 오프라인 모두 판매 불가)
	안전인증표시 없는 전기용품 또는 공산품	
	음란물	
	상표권 침해 물품	
	저작권 침해 물품	
판매제한 물품	주류	판매업 승인 대상
	유해화학물질	판매업 등록 또는 허가대상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신고 대상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 대상
	청소년유해매체물, 청소년유해약물, 청소년유해물건	만 19세 이상인 자에게만 판매 가능

〈판매금지 물품〉

□ 담배

-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소매인 지정을 받은 자가 판매할 수 있으나, 인터넷쇼핑몰에서는 판매할 수 없음(담배사업법 제12조 제4항)

□ 마약류

-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은 마약류소매업자(약사법에 따라 등록된 약국개설자)가 판매할 수 있으나, 인터넷쇼핑몰에서는 판매할 수 없음(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3항)

□ 의약품

- 약국개설자 및 의약품판매업자로서 그 약국 또는 점포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됨(약사법 제50조 제1항)

□ 모의총포

- 수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총포와 아주 비슷하게 보이는 모의총포를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할 수 없음(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11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별표 5의2)

□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판매업 허가를 받은 자라고 하더라도, 이를 인터넷쇼핑몰에서 판매할 수 없음. 다만, 제조업자·판매업자·

임대업자가 허가받은 제품에 대해 인터넷으로 광고하는 것은 가능함(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8조 제1항)

□ 안경, 콘택트렌즈

- 안경(시력보정용에 한정)과 콘택트렌즈는 안경사가 판매할 수 있으나, 인터넷 쇼핑몰에서는 판매할 수 없음(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5항)

□ 안전인증표시 없는 전기용품 또는 생활용품

- 안전인증 대상 전기용품 등의 판매
 - 인터넷쇼핑몰에서 안전인증표시가 없는 안전인증 대상 전기용품이나 자율안전 확인 신고의 표시 등이 없는 자율안전 확인 대상 전기용품을 판매할 수 없음(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0조 제1항)
 - ※ “안전인증 대상 전기용품”이란 구조와 사용방법 등으로 인해 화재·감전 등의 위험 및 장애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전기용품을 말함
- 안전인증 대상 생활용품 등의 판매
 - 인터넷쇼핑몰에서 ① 안전인증표시가 없는 안전인증대상 생활용품, ② 자율안전확인표시가 없는 자율안전확인대상 생활용품, ③ 안전·품질표시가 없는 안전·품질표시대상 생활용품이나, ④ 어린이보호포장표시가 없는 어린이보호 포장대상 생활용품을 판매할 수 없음(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0조 제1항 등)
 - ※ “안전인증대상 생활용품”이란 구조·재질·사용방법 등으로 인해 소비자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 재산상 피해 또는 자연환경의 훼손에 대한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생활용품
 - ※ “안전확인대상 생활용품”이란 구조·재질·사용방법 등으로 인해 소비자의 신체에 대한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생활용품 중 제품검사만으로도 그 위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생활용품

- ※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생활용품”이란 소비자가 취급·사용·운반 등을 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하거나 위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는 생활용품과 소비자가 성분·성능·규격 등을 식별하기 곤란한 공산품
- ※ “어린이보호포장대상 생활용품”이란 소비자가 마시거나 흡입하는 경우에 중독 등의 위해가 우려되는 생활용품 중에서 어린이보호포장(성인이 개봉하기는 어렵지 않지만 만 5세 미만의 어린이가 일정 시간 내에 내용물을 꺼내기 어렵게 설계·고안된 포장(용기 포함))의 대상이 되는 생활용품

□ 음란물

● 「형법」상 판매 금지

- 「형법」제243조에 따르면, 음란한 문서, 도화, 필름이나 그 밖의 물건을 판매해서는 안 됨
 - ⇒ 인터넷쇼핑몰에서 ‘물건 형태(오디오테이프, 비디오테이프, DVD 등) 음란물’을 판매할 수 없음
 - ※ 음란의 개념 자체가 추상적이므로 음란물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은 결국 법원의 판단에 따라 결정됨
 - ※ 컴퓨터 프로그램 파일은 형법 제243조의 음란한 문서, 도화, 필름 기타 물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형법 제243조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대법원 1999. 2. 24. 선고 98도3140 판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판매 금지

- 정보통신망을 통해 음란한 부호, 문서, 음향, 화상 또는 영상물을 판매해서는 안 됨(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 ⇒ 인터넷쇼핑몰에서 전자적 형태(화상, 음향 등)의 음란성 정보는 판매금지됨

□ 상표권 침해 물품

- 상표권의 보호
 - 모든 상표가 보호를 받는 것은 아니며「상표법」에 따라 상표등록출원을 하고 상표등록이 된 상표에 대해서만 그 상표권이 보호 받음(상표법 제9조 제1항)
<예> 모나미(monami), 나이키(nike), 리바이스(Levi's), 아디다스(adidas) 등
- 상표권 침해 물품의 일반적 판매 금지
 - 인터넷쇼핑몰에서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판매할 수 없음
<예> 해외유명브랜드의 상표를 사용한 소위 “짜퉁” 또는 “가품”

□ 저작권 침해 물품

- 저작권은 상표와는 달리 등록을 하지 않아도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를 받음
- 저작권 침해 물품의 일반적 판매 금지
 - 인터넷쇼핑몰에서 복제·공중송신·배포·2차적 저작물 작성 등의 방법으로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물품을 판매할 수 없음(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저작권 침해 물품의 판매 사례>
 - 이미지(사진, 그림 등)를 도용한 물품을 판매
 - 물품의 상세설명을 도용하여 판매
 - mp3파일, DVD, 비디오, 음반 등을 복제해서 판매

〈판매제한 물품〉

□ 주류

- 주류는 주류제조업면허자로서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자만이 우체국·전통주 제조자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1개 사이트에 한정) 등을 통해서만 제한적으로 판매할 수 있음(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 위임 고시(국세청 고시 제2017-17호 제3조))

□ 유해화학물질

- 관찰물질 제조·수입업 신고를 하거나 유독물, 취급제한물질 또는 취급금지물질을 취급하는 데에 필요한 일정한 시설을 갖춘 후 유독물 판매업 등록을 하거나 취급제한물질·취급금지물질 판매업 허가를 받아야만 인터넷쇼핑몰에서 판매할 수 있음(화학물질관리법 제20조 제1항, 제31조 제1항 및 제34조 제1항)

□ 건강기능식품

- 건강기능식품은 판매에 필요한 일정한 시설을 갖춘 후, 신고해야만 인터넷쇼핑몰에서 판매할 수 있음(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 의료기기

-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를 해야만 다음의 의료기기를 인터넷쇼핑몰에서 판매할 수 있음(의료기기법 제17조 제1항)

- 다 음 -

1. 질병의 진단·치료·경감·처치 또는 예방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2. 상해 또는 장애의 진단·치료·경감 또는 보정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3. 구조 또는 기능의 검사·대체 또는 변형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4. 임신조절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 청소년유해매체물, 청소년유해약물, 청소년유해물건

- 인터넷쇼핑몰에서 청소년유해매체물,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청소년(만 19세 미만인 자를 말함)에게 판매할 수 없음(청소년보호법 제16조 제1항 및 제28조 제1항)
⇒ 해당 물품을 판매할 경우에는 반드시 구매하려는 사람의 연령을 확인해야 함

※ 청소년유해약물등 (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4호)

◆ 청소년유해약물

- 주류, 담배, 마약류, 환각물질, 그 밖에 중추신경에 작용하여 습관성, 중독성, 내성 등을 유발하여 인체에 유해하게 작용할 수 있는 약물 등

◆ 청소년유해물건

- 성기구, 청소년에게 음란성·포악성·잔인성·사행성 등을 조장하는 완구류 등
- 상세한 품목은 여성가족부 청소년유해물건 고시에서 지정



4. 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 **(설립근거)** 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32조에 따라 2000년 4월 12일 발족하였으며, 사무국은 한국인터넷진흥원에 두고 있음
 - ※ 2016년 1월, 정보통신산업진흥원으로부터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 이관됨
- **(위원회 구성)** 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50명이하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하며, 임기는 3년으로 1회에 한하여 연임 가능
 - 조정위원은 ①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職)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으로서 전자문서 또는 전자거래 관련 분야를 전공한 사람, ② 4급 이상 공무원(고위 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을 포함한다)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공기관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으로서 전자문서 또는 전자거래 업무에 관한 경험이 있는 사람, ③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④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 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⑤ 그 밖에 전자문서 또는 전자거래와 분쟁조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
- **(주요기능)** 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의 사전 분쟁예방을 위하여 전자거래사업자 및 전자거래이용자를 대상으로 교육 및 홍보 사업을 추진하고, 사후적 분쟁해결을 위하여 상담 및 조정 서비스를 제공하며, 건전한 전자거래 시장 환경 조성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

- **(조정대상)** 기업과 소비자 간(B2C), 개인 간(C2C), 기업 간(B2B), 정부와 기업 간(G2B) 등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로 발생하는 분쟁(법 제33조)
- **(조정대상)** 분쟁조정 신청은 판매자·구매자 구분 없이 아래의 방법으로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만 14세 미만 아동이 신청할 경우 법적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다.
 - 홈페이지(www.ecmc.or.kr)를 통한 온라인 접수
 - 방문 또는 우편 : 홈페이지에서 분쟁조정 신청서 다운로드, 작성 후 제출 또는 발송
 - ※ 주소 : 전남 나주시 진흥길 9 한국인터넷진흥원 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
 - 팩스 : 홈페이지에서 분쟁조정신청서 다운로드, 작성 후 F. 061-820-2613으로 전송
- **(분쟁유형)** 전자문서·전자거래로 발생한 계약(청약철회거부, 계약 불이행 등), 배송(배송지연, 배송비 부담 등), 상품정보(가격·상세정보 오기 등)에 대한 분쟁 등
- **(관련규정)**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6장
- **(조정방법)** 위원회 또는 조정부는 분쟁조정 신청을 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조정안을 작성하여 분쟁당사자에게 권고하여야 하며, 권고를 받은 당사자는 권고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조정안에 대한 수락여부를 위원회 또는 조정부에 통지 하여야 한다.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락한 것으로 간주
- **(조정효력)**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판상 화해의 효력(법 제35조)
- **(조정방법)** 홈페이지, 우편, 이메일 등을 통해 조정신청을 접수하며, 조정부는 대면, 서면, 전화 조정(법 시행령 제19조 및 제20조)
- **(조정비용)** 무료

MEMO



MEMO



MEMO



MEMO



— 연구진 —

연구책임 전동진 선임연구원(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원고작성)

연구보조원 전소영 선임(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감리위원 전홍규 사무국장(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심의위원 임병석 교수(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안전한 개인 간 전자거래를 위한 가이드북

인쇄 2023년 4월

발행 2023년 4월

발행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인터넷진흥원

디자인·제작 하라기획 Tel. (061) 332-1210

〈비매품〉

※ 본서 내용의 무단전재를 금하며, 인용 시에는 반드시 출처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인터넷진흥원의 「안전한 개인 간 전자거래를 위한 가이드북」이라고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